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56 호 2026. 4. 9.(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규칙 제40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훈령 제4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7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9)].....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77호[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78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444호[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445호[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497호[『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빈집 리모델링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06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9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전 18:00”을 “전(토요일·공휴일 포함) 18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선거 공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27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44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63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등----- ----- ----- ----- -----.</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p> <p>⑦ (생략)</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다만----- 토요일·공휴일-----.</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전(토요일·공휴일 포함) 18시-----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8조의2(선거 공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p>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교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장 등 선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거 공고 규정 신설 등 선거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보자 등록 기간에 토요일·공휴일 포함(안 제8조제6항)
- 선거 공고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4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표란에 “○”표를 한다”를 “기표란에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효·기권)”을 “(무효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공직선거법」 제179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투표방법) ① (생략)</p> <p>②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되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u>기표란에 “○”표를 한다.</u></p> <p>③ ~ ⑥ (생략)</p>	<p>제5조(투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기표란에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무효·기권) ①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u> 2. <u>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 청인이 누락된 것.</u> 3. <u>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u> 4. <u>2개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한 것.</u> 5. <u>동일 후보자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u> 6. <u>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u> 7. <u>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u> 8. <u>인위적으로 오손된 것.</u> 9. <u>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u> <p>②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p>	<p>제6조(무효투표) ①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얇은 용지는 기권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1.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2.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별지 제1호서식】

투 표 용 지

<앞면>

34cm										3cm
투 표 용 지										
(○ ○ 선 거)										
3cm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인) 15cm								3cm	
										3cm

<뒷면>

후 보 자 성 명									
기 표 란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공직선거법」 제179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투 표 용 지

<앞면>

23.7cm										3cm
투 표 용 지										
(○ ○ 선 거)										
3cm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인) 15cm								3cm	
										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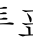
<뒷면>

후 보 자 성 명									
기 표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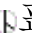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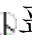
※ 투표용지 색상은 선거 종류에 따라 적의 운영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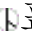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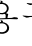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삭제 <2015. 8. 13.>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 [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현행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사무를 추진하는데 있다. <개정 2011. 12. 19., 2022. 1. 13.>

제2조(선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19., 2022. 1. 13.>

제3조(감표위원) ① 감표위원은 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22. 1. 13.>

② 감표위원은 의원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며 감표위원의 투표는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③ 감표위원은 개표결과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결과 집계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투표순서) 투표순서는 호명 순으로 하며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편 앞줄부터 좌측 의석 순으로 투표한다. 다만, 전 의원이 투표순서를 숙지한 다음부터는 호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5조(투표방법) ① 의원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개정 2022. 1. 13.>

②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되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기표란에 "○"표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투표할 때에는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3.>

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 나는 투표수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2. 1. 13.>

⑥ 의장 투표는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에게 전달하여

의장이 투표한 후에 사무직원이 인수받아 명패함에 넣는다. <개정 2022. 1. 13.>

제6조(무효·기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2. 1. 13.>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3.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2개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한 것.
5. 동일 후보자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6. 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7.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
8. 인위적으로 오손된 것.
9.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②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③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1.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2.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7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작하며, 투표용지 뒷면은 지역구·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다.
<개정 2022. 1. 13., 2024. 12. 26.>

제8조(청인의 날인) 투표용지 앞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1. 12. 19., 2022. 1. 13.>

제9조(개표) ①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직원이 개표를 한다. 개표의 순서는 명패수를 계산한 다음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2. 1. 13.>

② 개표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제10조(선거결과 선포) 의장(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도 포함한다)은 선거결과에 따라 당선의원을 선포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장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기표용구 지정(안 제5조제2항)
- 유·무효투표 혼선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준용(안 제6조)
- 선거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투표용지를 A4용지 규격으로 변경(별표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9

나. 허가 연월일: 2026. 4. 9.

2. 점용·사용의 목적: 인공구조물의 설치(계류보전 및 산지사방사업)

3. 점용·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12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180m²

나. 기 간: 2026. 4. 9. ~ 2041.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공원녹지과)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77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의회 의결일자 : 2026. 4.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41,963,905	100.00%	519,752,210	100.00%	22,211,695	4.27%
일반회계	535,687,366	98.84%	513,647,732	98.83%	22,039,634	4.29%
특별회계	6,276,539	1.16%	6,104,478	1.17%	172,061	2.82%
기타특별회계	6,276,539	1.16%	6,104,478	1.17%	172,061	2.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9,800	0.01%	59,800	0.01%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4,699	0.08%	396,378	0.08%	28,321	7.14%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12,240	0.21%	1,005,000	0.19%	107,240	10.67%
주차장특별회계	4,679,800	0.86%	4,643,300	0.89%	36,500	0.79%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35,687,366	100.00%	513,647,732	100.00%	22,039,634	4.29%
100	지방세수입	94,470,000	17.64%	94,470,000	18.39%	0	0.00%
110	지방세	94,470,000	17.64%	94,470,000	18.39%	0	0.00%
200	세외수입	25,732,928	4.80%	25,414,439	4.95%	318,489	1.25%
210	경상적세외수입	23,139,386	4.32%	23,100,375	4.50%	39,011	0.17%
220	임시적세외수입	862,342	0.16%	582,864	0.11%	279,478	47.95%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31,200	0.19%	1,031,200	0.20%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700,000	0.13%	700,000	0.14%	0	0.00%
300	지방교부세	17,360,000	3.24%	16,130,000	3.14%	1,230,000	7.63%
310	지방교부세	17,360,000	3.24%	16,130,000	3.14%	1,230,000	7.63%
400	조정교부금등	62,278,300	11.63%	53,439,300	10.40%	8,839,000	16.54%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2,278,300	11.63%	53,439,300	10.40%	8,839,000	16.54%
500	보조금	318,624,667	59.48%	308,976,165	60.15%	9,648,502	3.12%
510	국고보조금등	215,513,325	40.23%	208,969,582	40.68%	6,543,743	3.13%
520	시·도비보조금등	103,111,342	19.25%	100,006,583	19.47%	3,104,759	3.1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221,471	3.21%	15,217,828	2.96%	2,003,643	13.17%
710	보전수입등	11,893,827	2.22%	10,000,000	1.95%	1,893,827	18.94%
720	내부거래	5,327,644	0.99%	5,217,828	1.02%	109,816	2.10%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35,687,366	100.00 %	513,647,732	100.00 %	22,039,634	4.29 %
010	일반공공행정	24,553,117	4.58 %	24,288,541	4.73 %	264,576	1.09 %
020	공공질서및안전	3,256,181	0.61 %	2,927,955	0.57 %	328,226	11.21 %
050	교육	1,746,110	0.33 %	1,737,110	0.34 %	9,000	0.52 %
060	문화및관광	27,005,891	5.04 %	23,828,967	4.64 %	3,176,924	13.33 %
070	환경	15,854,340	2.96 %	15,517,991	3.02 %	336,349	2.17 %
080	사회복지	312,282,806	58.30 %	305,327,234	59.44 %	6,955,572	2.28 %
090	보건	16,662,570	3.11 %	16,162,210	3.15 %	500,360	3.10 %
100	농림해양수산	23,194,962	4.33 %	21,582,096	4.20 %	1,612,866	7.47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40,738	0.59 %	3,321,446	0.65 %	△180,708	△5.44 %
120	교통및물류	9,248,495	1.73 %	6,862,133	1.34 %	2,386,362	34.78 %
140	국토및지역개발	20,750,020	3.87 %	19,330,372	3.76 %	1,419,648	7.34 %
160	예비비	527,156	0.10 %	613,555	0.12 %	△86,399	△14.08 %
900	기타	77,464,980	14.46 %	72,148,122	14.05 %	5,316,858	7.37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신현동 642	달곡2길 101-17	2026. 4. 8.	2026. 4. 9.	2004. 8. 9.	옛 지명인 달곡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4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3.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95조(벌칙)
5.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위치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붙임 참조
울산광역시 복구 관내 하천	미상	미상	무단 점유 (경작, 가설건축물 등)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복구청 홈페이지 공고

7. 공시송달내용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5. 4.(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

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공시송달 대상 내역

번호	시·도	시·군·구	위치	하천명	하천 분류	원인자	점유내용
1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0-148	금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58-24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78-25	약수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78-25	약수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48-1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6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24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7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224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8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9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0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148	정자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1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3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0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4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0-2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5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5-203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1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5-115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23-3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18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1008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23-3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1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0-28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2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0-28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0-28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489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5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0-38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6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44-2	염포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69~ 염포동	염포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1-1	염포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69~ 염포동	염포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942	염포천	지방하천	미상	그늘막 등
3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	염포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31-1	금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3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31-2	금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4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0-148	금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35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08-7	금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6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592	어물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7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040-2	어물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8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047	어물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9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321	산맥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0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317	산맥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41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328	산맥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42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29-4	창평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43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92-26	창평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2-2~ 718-5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5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7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4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5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5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34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5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5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5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6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6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5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47-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6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263-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6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7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7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7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7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7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7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7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7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7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7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9-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79-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8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88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35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89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125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90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42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그늘막 등
91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30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그늘막 등
9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30~43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9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30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9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9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9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339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9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339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9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9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144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0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339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10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266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0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2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0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2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10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33	신명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05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41-1	신명천	지방하천	미상	평상 등
106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54-8	신명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07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산151-1	신명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08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10	대안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09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산368-1	대안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10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66-1	대안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11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63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12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49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13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49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14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40-1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15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42-2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16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42-2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17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908-1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18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908-1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1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18	명촌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18	명촌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2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39	명촌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23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96-15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91-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2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328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29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3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3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3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39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4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42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6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3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6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4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49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5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55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61-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6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61-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59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2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3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09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64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38-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8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6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6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6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7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3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7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3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10-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7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8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43-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8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8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8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8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8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3-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8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6-5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87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6-5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8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76-5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89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76-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78-5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15-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04-26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35-4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9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29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1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29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86-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8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9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3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0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0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02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03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0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17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0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56-6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06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56-61	동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0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08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149-3	동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09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산53-1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0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산525-1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11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572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2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95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13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95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21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23-3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5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1008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661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5-206	무룡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8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20-27	산하천	지방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9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4-1	매곡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2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41-3	매곡천	지방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4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3.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5.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위치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불임 참조
울산광역시 복구 관내 소하천	미상	미상	무단 점유 (경작, 가설건축물 등)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복구청 홈페이지 공고

7. 공시송달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5. 4.(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불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공시송달 대상 내역

번호	시·도	시·군·구	위치	하천명	하천 분류	원인자	점유내용
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43-2	이원천	소하천	타상	기타 무단점유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43-4	이원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67-1	중산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59-10	중산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24-93	순금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5-148	주렴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5-148	주렴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8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4	장등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9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58-16	장등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0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58-16	장등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11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58-60	장등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2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58-60	장등천	소하천	미상	평상 등
13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42	복성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14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42	복성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5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749-1	당사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6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749-1	당사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7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749-1	당사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18	울산광역시	북구	요문동 939	제2울동천	소하천	미상	그늘막 등
19	울산광역시	북구	요문동 939	제2울동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산24-1	제2울동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산24-1	제2울동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9	제2울동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99	상연암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99	상연암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5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928	동산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6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40-4	수지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27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908-7	명세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8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935-6	가동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2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604	화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3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604	화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3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289-15	화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32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25-22	남골천	소하천	미상	평상 등
33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25-22	남골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4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35-9	차일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5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35-19	차일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6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35-19	차일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7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99	차일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38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913	차일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39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5	돌논천	소하천	미상	평상 등
4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4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등
48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49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347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227	마동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1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474	가동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52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482	가동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53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948	우음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54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86-2	장등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55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86-2	당사천	소하천	미상	기타 무단점유
5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391	화봉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5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391	화봉천	소하천	미상	불법경작 등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497호

『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

빈집 리모델링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대학생에게 5년간 임대하는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축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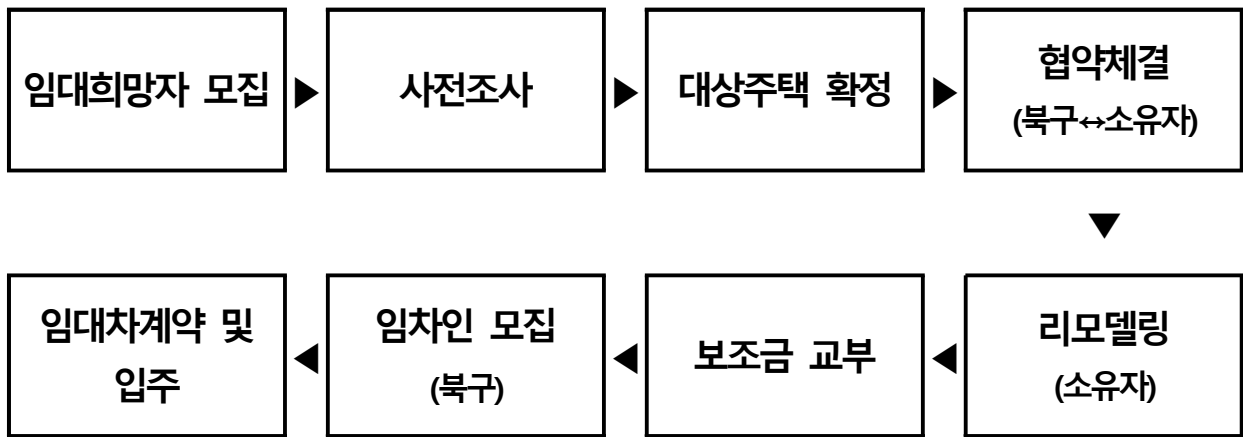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
 - ※ 제외대상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토지포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예산지원 : 동당 50,000천원(초과 시 자부담)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년 동안 임대(임대료 월 5만원)
 - 리모델링 범위 :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 등
(가구 및 집기 구입·설치 등 지원불가)
 - 개별 취사·위생 및 난방설비 등 정주여건 필수 충족
 -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인허가(대수선, 용도변경 등) 수반 시 자금 자부담
 - ※ 입주대상 : 무주택자(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외국인)
- 선정조건 : 빈집의 노후도, 접근성, 편의성 등 고득점 순에 따라 건축위원회 선정
- 신청기간 : 2026. 4. 7. ~ 2026. 5. 6.

2 빈집 리모델링 임대 희망자 신청

- 신청방법 : [붙임]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북구청 건축주택과
 - ※ 신청서식 :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한 : 2026. 5. 6.(수)까지(우편발송분은 신청기한 도착분까지 유효)

3 진행 절차



4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빈집 소유자가 신청)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2]
- 건물소유권확인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1부
- 토지소유권확인서류(토지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공사 견적서 2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호 나목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제출
 - ※ 추후, 관계법령에 따라 재건축 및 산출내역·도면 등 추가 제출할 수 있음

5 유의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임대 희망자)는 사업수행자(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지방계약법」 세부 절차는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을 것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의무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견적 및 산출내역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와 소유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월임대료는 5만원으로 5년간 의무임대하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임대 의무기간 등 협약사항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공고 모집예정이며, 재공고(2차공고)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시 임대인이 직접 지정 가능합니다.
 - ※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은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입주대상 제외
- 임대 종료 후 보수문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의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진 일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시 북구 건축주택과 건축안전팀(☎052-241-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신청 및 임대 동의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 사업신청 및 임대동의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건물 현황	소재지			건축연도	
	연면적(m ²)/층수			구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가 체크	연번	내용		체크사항	비고
	1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여부		여 / 부	
	2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		여 / 부	
	3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일치 여부		여 / 부	
수선 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리모델링 설계비 : 원 - 리모델링 공사비 : 원 ○ 지원 요청액 : 원 ※ 공사견적서 등 소요공사비 산출근거 첨부할 것.				
임대 기간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간				
임대료	임대의무기간 동안 협약한 금액으로 임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임대사항 및 사업전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h3 style="margin: 0;">북구청장 귀하</h3> </div>					
첨부서류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타필요서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전화번호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환수나 지원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성명		휴대폰번호		서명	
----	--	-------	--	----	--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506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3·6·9·12월 말에 발행하던 구보 발행월을 1·4·7·10월로 조정하여 연말·연초 발생하는 구정소식을 빠짐없이 신고,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보 발행월 변경 및 게시처 명확화 (안 제2조)
 - (현행) 매월 말 또는 분기 마지막 달 말 경에 발행,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
 - ⇒ (개정)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1·4·7·10월) 발행, 구 홈페이지에 게시
- 나. 구보의 배부대상 명시 (안 제4조)
- 다. 구보의 소식제공 조항 삭제 (안 제5조)

3.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미디어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미디어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123, 팩스번호 : 052)241-7129
- 전자우편(E-mail) : yang8858@korea.kr

6. 기타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월은 1월, 4월, 7월 및 10월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월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함께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3.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4. 출향인사, 관내·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의 관련인

② 구보의 배부방법은 직접 배부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말 또는 분기 마지막 달 말경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발행한다.</p> <p>② (생략)</p> <p>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온라인 전산망에 인터넷 구정신문으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p>	<p>제2조(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월은 1월, 4월, 7월 및 10월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월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함께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4조(배부와 비치) ① 구청장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p> <p>② 구보의 배부는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p>	<p>제4조(배부와 비치) ①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3.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4. 출향인사, 관내·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의 관련인 <p>② 구보의 배부방법은 직접 배부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p>
<p>제5조(소식 제공) 구정소식지 내용을</p>	<p><삭제></p>

<p>포함한 각종 공지사항, 문화행사 등 의 소식을 신청한 자에게는 문자메 시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 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p>
--

현행 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24>

제2조(발행)

①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말 또는 분기 마지막 달 말경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개정 07·10·24, 11.10.17>

② 구보는 발행일에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려면 제〇〇-2호, 제〇〇-3호 등으로 한다. [전부개정 07·10·24]

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온라인 전산망에 인터넷 구정신문으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07·10·24>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제3조에 따른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07·10·24>

- 1. 긴급 만남의 날 소집
- 2. 각종 재난·재해 발생
- 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청 및 시정시책 홍보

제4조(배부와 비치)

- ① 구청장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② 구보의 배부는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개정 11.10.17>

[전부개정 07·10·24]

제5조(소식 제공)

구청소식지 내용을 포함한 각종 공지사항, 문화행사 등의 소식을 신청한 자에게는 문자메시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